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85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7. 23.

다. 회 부 일 : 2025.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조정, 운영개선 명령 또는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현재의 평가 제도는 일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방만한 운영이나 낮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 없이 국가재정이 계속 지원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문화유산 돌봄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와 연계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하여 지정 취소,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 및 제80조의6).

Ⅲ. 검토의견

1.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안 제80조의5 및 제80조의6)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 취소 및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시·도지사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 및 제80조의6).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 ----- -----.

1. ~ 4.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0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재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사 및 응급

조치 등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은 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해야 함.
- 국가는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도 이와 비슷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음.
- 한편,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국가 등의 지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함.

-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그런데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조정, 운영 개선 명령 또는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평가 결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문화유산돌봄사업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또한, 돌봄사업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한다는 의견이고, **한국문화유산돌봄협회**는 개정안이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 포괄적 사유로 지정 취소를 가능하게 해 현장 혼란과 종사자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평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중심의 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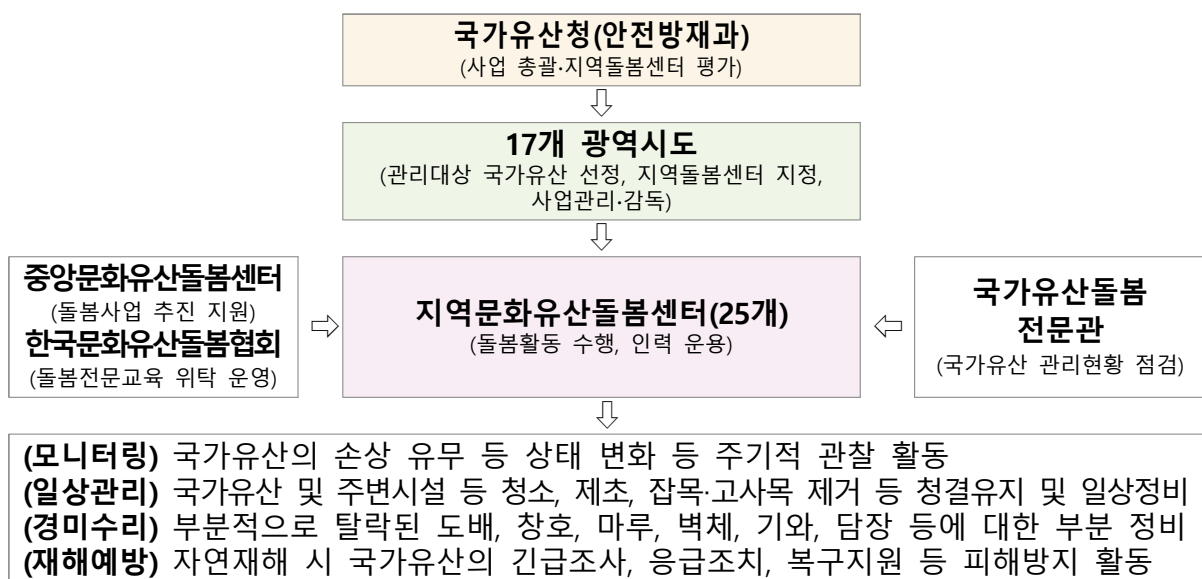
참 고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가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한 수리 및 재해예방(대응) 등 상시·예방적 보존 관리를 통한 국가유산 보호
- (법적근거) 「문화유산법」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법 제80조의3~7)
- (사업기간) 2010년 ~ (계속)
- (사업대상) 국가(시도)지정·등록 및 비지정유산 9,018건('25.10월 기준)
- (사업예산) 19,483백만원('25년 기준)
- (사업내용)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한 수리 등 돌봄활동 및 재해 시 피해현황 조사·응급복구 지원 등 재해예방(대응) 지원

□ 운영 체계



□ 관련 통계

(단위 : 건, 개, 명, 백만원 / 기준일자 : 2025.10.1.)

구 분	2010	2021	2022	2023	2024	2025
관리대상유산	691	8,665	9,047	9,050	8,091	9,018
지역돌봄센터	5	23	25	25	25	25
상시고용인력 (전문인력)	91 (-)	774 (414)	902 (450)	900 (450)	750 (580)	773 (595)
사업예산 (지자체보조/국비)	4,905	16,205 (14,430)	19,286 (17,111)	20,651 (18,476)	18,962 (16,886)	19,483 (17,349)

□ 전국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현황

(기준일자 : 2025. 7.)

연번	시·도	센터명	소재지
1	서울	서울종로구 문화유산돌봄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2	부산	부산 문화유산돌봄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3	대구	대구 문화유산돌봄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4	인천	인천 문화유산돌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5	광주	광주 문화유산돌봄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6	대전	대전 문화유산돌봄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7	울산	울산 문화유산돌봄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8	세종	세종 문화유산돌봄센터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	경기 문화유산돌봄센터	경기도 수원시
10	강원	강원 문화유산돌봄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11	충북	충북 문화유산돌봄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12	충남	충남동남 문화유산돌봄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13		충남서북 문화유산돌봄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14	전북	전북동부 문화유산돌봄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15		전북서부 문화유산돌봄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16	전남	전남동부 문화유산돌봄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17		전남중부 문화유산돌봄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18		전남서부 문화유산돌봄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19	경북	경북북부 문화유산돌봄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20		경북남부 문화유산돌봄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21		경북서부 문화유산돌봄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22	경남	경남동부 문화유산돌봄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23		경남서부 문화유산돌봄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24	제주	제주 문화유산돌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5		제주 자연유산돌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관련 조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유산
4.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지원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